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2,635,334	19,279,060
일반회계	582,430,486	17,472,915
특별회계	60,204,848	1,806,145
공기업특별회계	29,323,147	879,6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323,147	879,694
기타특별회계	30,881,701	926,4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2,601	22,278
자활기금특별회계	2,385,488	71,565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63,000	58,8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5,900	8,57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0,000	6,60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930,809	57,924
수질개선특별회계	23,353,903	700,61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24,74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